

2

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

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

- ▣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 (제2.2조)
- ▣ 당사국은 1994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,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(제2.8조)
- ▣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 제한 금지의 예외 (부속서 2-가)
 -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, WTO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를 예외로 규정
 - 미국은 상기 WTO관련 2가지 조치 외에 원목수출통제, Jones Act(미국내 수상운송 규제)를 추가 예외로 규정
 - ※ 미국은 기체결한 모든 FTA에서 상기 예외를 반영
 - 미국은 서부에 위치한 17개 주(Alaska 및 Hawaii 제외)의 연방 및 주정부 소유림에서 벌채된 원목의 수출을 금지(산림자원의 보존 및 부족완화법(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& Shortage Relief Act of 1990))
 - 미국 상선법(제27장)은 미국내 화물운송은 “미국에서 ①건조되고

② 미국민이 소유(법인인 경우, 75%이상 미국민 소유)하고 있는
 ③ 미국 국적선(U.S. built, U.S. owned, U.S. flag vessel)"에 의해
 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

※ Jones Act는 넓은 뜻으로 미국의 국내수상운송과 관련된 법령을 통칭
 하나, 좁은 의미로는 상선법 제27장(Section 27 of the Merchant
 Marine Act of 1920)을 지칭

-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Jones Act와 같이 국내항간 운송선박은 내국민으로
 한정하고 있으나, 국내 건조요건은 없음. (선박법 제2조, 제6조)

조정관세 반영 (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일반주해)

□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표 기준관세율: 조정관세

참고: 조정관세

○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%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
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

- 현 조정관세 대상 품목은 대부분 주수입원이 중국인 품목

〈 조정관세 연도별 운용 현황 〉

	97	98	99	00	01	02	03	04	05	06	07	08	09	10	11
폐지	–	24	8	3	1	3	–	3	1	1	2	–	–	1	–
세율인하	–	10	10	20	10	9	11	7	9	8	7	8	7	7	6
운용품목	62	38	30	27	26	23	23	20	19	18	16	16	16	15	15

※ 2012년 조정관세 적용 품목 (15개)

- 당면, 새우젓, 활동, 활농어, 냉동민어, 냉동 오징어, 냉동명태, 냉동
 꽁치, 활민어, 활뱀장어, 혼합조미료, 맥주, 표고버섯, 찐쌀, 합판

일시반입 상품에 대한 면세 (제2.5조)

▣ 양국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일부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

※ 일시반입 대상 물품

-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, 소프트웨어, 그리고 방송 및 영화 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
-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
-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
-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

참고: 양국 관련 국내법

○ 우리

- '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4'를 통해 협정상 일시반입 대상인 미국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

○ 미국

- 관세율표(HTSUS) 개정을 통해 협정상 일시반입 대상인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 (HTSUS Chapter 98, Subchapter 22, US note 1(b)에 한미 FTA 추가)

※ 한·미 FTA는 무관세 일시반입(제2.5조)의 경우, 무관세가 아니었다면 부과되었을 부과금의 110% 이하의 담보율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(제2.5조제3항)하고 있으나, 미국은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, 한국 거주민이 반입한 한국 원산지의 무관세 일시반입 상품에 대하여 채권 등 담보유지의무 면제 (19 CFR 10.31)

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 (제2.6조)

- ▣ 양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

※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의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, 또는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무관

참고: 양국 관련 국내법

○ 우리

- '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4'를 통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미국에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

○ 미국

- 관세율표(HTSUS) 및 세관국경보호국(CBP)의 통관규정 개정을 통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한국에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
- ☞ HTSUS의 Chapter 98, Subchapter 22, US note 1(c)에 한미 FTA 추가
- ☞ 미 세관보호국(CBP)의 한미FTA 이행관련 통관규정(19 CFR Part 10)에 관련 규정 포함

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(제2.10조)

- ▣ 미국은 우리 상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(merchandise processing fee)를 면제

종 류	징수내역	징수근거 및 대상
물품취급수수료 (Merchandise Processing Fe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합예산총괄조정법 (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, 1985)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(종가세) (1) 미국속령의 제품, (2) 최빈 국가의 제품, (3) 카리브연안 특혜대상국가의 제품은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,000불 이상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입가격의 0.21% (최대 건당 \$485) 2,000불 이하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신고: \$2 수동신고(개인): \$6 수동신고(세관): \$9

참고: 미측 관련 국내법

- 한미 FTA 이행법으로 통합예산총괄조정법(19 USC 58c(b))을 개정하여 한국산 상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
- 미 세관국경보호국(CBP)이 한국산 상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를 규정한 통관 지침 발표

양국 특산품 인정 [제2.13조]

- 미국은 안동소주와 경주법주를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하고, 우리나라는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를 미국의 특산품으로 인정
-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국에서 동일 명칭으로 판매하는 것을 불허
 - 미국은 재무부 고시(TTB Ruling)를 통해, 우리는 주세 관련 법령을 통해 각각 관련 의무 이행

상품(공산품/임수산물) 양허

-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

■ 승용차

- 미국의 경우, 한·미 FTA 협정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 까지는 기준관세율 2.5%를 적용하다가, 이행 5년차 1월 1일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

☞ 한·미 FTA가 2012.3.15에 발효하였으므로, 미국은 한국이 원산지인 승용차에 대하여 동 협정 이행 4년차인 2015.12.31까지 기준관세율 2.5%를 유지하고 이행 5년차인 2016.1.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

- 우리나라의 경우, 한·미 FTA 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현행 기준관세율 8%를 4%로 인하하여 이행 4년차까지 동 관세율을 적용하다가, 이행 5년차 1월 1일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

☞ 한·미 FTA 협정이 2012.3.15에 발효하였으므로, 한국은 미국이 원산지인 승용차에 대하여 2012.3.15부로 기준관세율 8%를 4%로 인하하여, 동 협정 이행 4년차인 2015.12.31까지 4%를 유지한 후, 이행 5년차인 2016.1.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

■ 전기자동차

- 미국의 경우, 한국 원산지 전기자동차(HS 870390)에 대한 관세 2.5%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, 한·미 FTA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(당초 9년간 철폐에서 4년간 철폐로 단축)

☞ 한·미 FTA 협정이 2012.3.15에 발효하였으므로, 미국은 한국이 원산지인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0.5% 씩 관세를 인하하여 한·미 FTA 이행 5년차인 2016.1.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

- 우리나라의 경우, 한·미 FTA 발효일에 미국 원산지 전기

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8%에서 4%로 인하하고, 한·미 FTA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다가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 (당초 9년간 철폐에서 4년간 철폐로 단축)

☞ 한·미 FTA 협정이 2012.3.15에 발효하였으므로, 우리나라를 미국이 원산지인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에 4%의 관세를 적용하고 2013.1.1부터 4단계에 걸쳐 매년 1%씩 관세를 인하하여 한·미 FTA 이행 5년차인 2016.1.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

▣ 화물자동차

- 미국의 경우,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한·미 FTA 협정 이행 1년차부터 이행 7년차까지는 미국의 현행 기준 관세율 25%를 유지한 후,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,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
- ☞ 한·미 FTA 협정이 2012.3.15에 발효하였으므로, 미국은 한국이 원산지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12.3.15부터 2018.12.31까지는 25%의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9.1.1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8.33% 씩 관세를 인하하여 2021.1.1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

참고: 한·미 자동차분야 특징

- 미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의 8.7배 규모 : (韓) 147만대 vs. (美) 1,274만대
- 대미수출은 수입의 42배 규모 : (수출) 58.8만대 vs. (수입) 1.4만대
- 반면, 우리 자동차 관세는 미국의 3배 이상 : (韓) 8% vs. (美) 2.5%
 - ※ 추가협상 결과 이후에도, 발효후 4년간 우리는 4%, 미국은 2.5% 유지
- 또한, 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은 10%에 육박

-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, 비선형 관세철폐, TRQ 등을 도입하여 민감성 확보

- 명태는 15년,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 확보

〈 양국 상품(섬유, 농산물 포함) 양허결과 〉

(단위: 백만불, %)

양허 단계	우리나라 전체품목				미국 전체품목			
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
즉시	9,003	80.0%	21,778	77.6%	8,623	82.1%	28,280	69.2%
2~3년	765	6.8%	3,362	12.0%	366	3.5%	508	1.2%
3년 이내	9,768	86.8%	25,140	89.6%	8,989	85.6%	28,788	70.4%
5년	589	5.2%	842	3.0%	756	7.2%	10,346	25.3%
5년 이내	10,357	92.0%	25,982	92.6%	9,745	92.8%	39,134	95.7%
6~7년	44	0.4%	122	0.4%	92	0.9%	31	0.1%
9~10년	667	5.9%	1,240	4.4%	586	5.6%	1,719	4.2%
10년 이내	11,068	98.3%	27,344	97.4%	10,423	99.2%	40,885	100.0%
10년초과	161	1.4%	477	1.7%	82	0.8%	2	0.0%
계절/현행관세	16	0.1%	213	0.8%	–	–	–	–
제외	16	0.1%	26	0.1%	–	–	–	–
합 계	11,261	100.0%	28,060	100.0%	10,505	100.0%	40,887	100.0%

※ 수입액 : 2003~2005년 3개년 평균

※ 2011.2월 추가협상 결과 반영

〈 양국 상품(섬유, 농산물 제외) 양허결과 〉

(단위: 백만불, %)

양허 단계	우리나라 공산품				미국 공산품			
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
즉시	7,160	84.9%	19,957	80.3%	6,171	87.0%	26,441	69.7%
2~3년	719	8.5%	3,323	13.4%	356	5.0%	508	1.3%
3년 이내	7,879	93.4%	23,280	93.7%	6,527	92.0%	26,949	71.0%
5년	228	2.7%	453	1.8%	206	2.9%	9,838	25.9%
5년 이내	8,107	96.1%	23,733	95.5%	6,733	94.9%	36,787	96.9%
6~7년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9~10년	323	3.8%	1,100	4.4%	344	4.8%	1,167	3.1%
10년 이내	8,430	100.0%	24,833	100.0%	7,077	99.8%	37,953	100.0%
10년초과	4	0.0%	7	0.0%	17	0.2%	2	0.0%
계절/현행관세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제외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합 계	8,434	100.0%	24,840	100.0%	7,094	100.0%	37,955	100.0%

※ 수입액 : 2003~2005년 3개년 평균

※ 2011.2월 추가협상 결과 반영

〈 미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〉

단계	품 목 수 (총 7,094개)	주요 품목 (관세율)
즉시	6,171	캠코더(2.1), TV카메라(2.1), 자동차 부품(2.5), 엔진(2.5), 헤드폰(4.9), 폴리아세틸수지(6.5), 에폭시수지(6.1), 피아노(4.7), 핸드백(3.3~20), 매트리스(3~6), 유리거울(6.5~7.8), 제트유 및 등유(배럴당 10.5~52.5센트) 등
3년	356	실리콘수지(3), 콘택트렌즈(2), 금속절삭가공기계(4.4), 유기계면활성제(4), 10인이상 승용자동차(2) 등
5년	206	승용차(2.5), 레디알타이어(4), 실리콘망간철(3.9), 폴리에스테르(6.5), 면직물(0~12.5) 등
10년	344	가정용 전자레인지(2), 폴리에스테르수지(6.5), 베어링(2.4~9), ABS수지(6.5), 섬유건조기(3.4), 화물자동차(25) 등 ※ 10년 비선형: 참치캔(6~35), 세라믹타(8.5/10), 철강(4.3~6.2)
10년 초과	17	특수신발(20~55.3, 12년 비선형)

〈 한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〉

단계	품 목 수 (총 8,434개)	주요 품목 (관세율)		
		공산품	임산물	수산물
즉시	7,160	자동차 부품(3~8), 크실렌(5), 통신용광케이블(8), 기어박스(8), 전자계측기(8), 헬륨(5.5), 할로겐전구(8), 도난/화재/가스경보기(8), 카본블랙(5.5), 광섬유(8) 등	원목(2), 기타 비금속광물(3~8), 벼루(8) 등	브라인슈림프알(8), 냉동굴(20), 검정대구(10, 냉동), 연어(10-산것, 냉동), (20-신선.냉장, 훈제) 등
3년	719	폴리카보네이트(6.5), 요소(6.5), 실리콘오일(6.5), 폴리우레탄(6.5), 골프채(8), 콘택트렌즈(8), 냉각기(8), 샴푸(8), 향수(8), 알칼리망간건전지(13), 제초제(6.5) 등	제재목류(5), 단판(5~8)	해삼(20), 왕게(20), 먹장어(10, 산갓), 등
5년	228	승용차(8), 고주파증폭기(8), 안전면도날(8), 환자감시장치(8), 면도기(8), 헤어린스(8), 치석제거기(8) 등	창문/틀(8), 로진(6.5), 코르크(8), 바구니(8), 등	명란(10, 냉동), 대구(10, 냉동), 바다가재(20), 새우살(20, 냉동), 은대구(10, 냉동) 등
10년	323	아크릴니트릴(6.5), 기초화장품(8), 폐놀(5.5), 초음파 영상진단기(8), 자기공명 촬영기기(8), 불베어링(13), 폴리에틸렌(6.5), 복합형 확성기(8), 아세톤(5.5), 안전밸브(8), 내시경(8) 등	목제식탁용품(8), 목재틀(8), 마루판(12) 등 (10년 비선형) 파티클보드(8), 섬유판(8), 합판(12) 등	홍어(27, 냉동), 임연수어(10, 냉동), 문어(20, 냉동) 등 (10년 비선형) 명태어육(10, 냉동 필레트), 오징어(24, 냉동), 꼬치(36, 냉동), 등
12년 (비선형)	1			고등어(10, 냉동)
12년 (TRQ)	2			민어(63, 냉동), 기타 납작(10, 냉동)
15년 (TRQ)	1			명태(30, 냉동)

※ 2011.2월 추가협상 결과 반영